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3. 4.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10. 12.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0. 10. 13.
- 다. 상정일자 : 제244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0. 10. 26.)  
상정, 심사, 보류  
제246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1. 1. 29.)  
상정, 심사, 보류  
제24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1. 3. 4.)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김 경 속

### 가. 제안이유

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포복지재단 설립에 따라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재단 설립 목적 및 근거 명시(안 제1조 ~ 제2조)

- 2)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안 제3조)
- 3)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4) 정관변경, 자료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5)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6)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3. 검토보고 (조광현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sup>1)</sup>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포복지재단<sup>2)</sup>을 설립·운영하고자 조례로 재단의 설립 목적 및 적용범위, 재단의 사업 및 기본재산의 조성방법, 재단의 정관, 운영재원 및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 등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 안 제1조는 마포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포복지재단을 설립한다는 “설립 목적”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상위법령으로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설립근거 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재 구에서 설립·운영하는 복지재단으로는 “동작복지재단, 양천사랑복지재단, 구로희망복지재단, 노원교육복지재단,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강남복지재단, 용산복지재단 등” 10개의 복지재단이 있음.

나. 안 제3조는 재단의 설립목적에 따라 “재단의 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기획 연구·조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교류, 협력 등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명시하였고

다. 안 제4조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우리구의 출연금<sup>3)</sup>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 안 제5조는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구청장과 협의해야 하고, 재단의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재단에 공무원의 파견과 공유재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 ○ 종합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구 복지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리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의 복지재단을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그 입법 취지의 타당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서 “출연금(306)”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비”라고 하며, 특히 재단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함.(102, 103쪽)

나. 다만, 복지재단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 재원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향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